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회 부 일 자 : 96. 6. 28 화순군수

나. 상 정 일 자 : 96. 7. 1(제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전면개정

다. 주요내용

-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농업 인력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을때에는 표지판을 지역입구에 게시(안 제4조)
- 시범지역 주재지도사의 역할부여(안 제8조)
- 시범지역내 대표마을에 주재지도사 사무실을 둠.(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관리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용어자체의 순화에 늦은감이 없지 않으며 동조례개정을 위해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6.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코자 함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15조

3. 주요골자

-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농업 인력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선정 및 육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을때에는 표지판을 지역입구에 게시 (안 제4조)
- 시범지역 주재지도사의 역할 부여 (안 제8조)
- 시범지역내 대표마을에 주재지도사 사무실을 둠 (안 제9조)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배양 및 전문농업 인력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을 개선 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범지역 요건) 시범지역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입지, 개발여건, 행정구역등을 고려하여 서로 인접한 마을로 주민협동이 가능한 2~3개 마을
2.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자연, 문화적 여건이 유리하면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시범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
3.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
4. 농촌개발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지원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
5. 기타 농촌지도소장이 지역특성 또는 사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시범지역의 선정) 시범지역의 선정은 제2조의 여건을 갖춘지역으로서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시범지역의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표 모형의 표지판을 지역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범지역의 추천) 읍.면장이 시범지역을 추천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개황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촌지도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시범지역의 육성) ① 선정된 시범지역의 육성 목표는 풍요로운 복지 농촌건설을 선도하며 다음 각호 사업을 중점 육성하여야 한다.

1. 농가소득 증대

2.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3. 건전한 의식계발

4. 경영체제의 협업화

5. 기타 자조사업

② 선정된 시범지역의 육성지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범지역 육성사업의 목표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지도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업무관장) ① 시범지역의 육성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지도업무를 하기 위한 우수 지도공무원중 1지역 1인을 배치하고 주재지도사로 칭한다.

③ 주재지도사의 정수 임용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주재지도사의 역할) 시범지역 주재지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범지역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 실천

2. 주민의 자율발전 체계를 확립 합의체 형성 촉구

3. 고품질, 적정생산, 제값받기 등 생산유통 교육실시

4. 합리적 경영방식으로 생산비 절감 지도

제9조 (주재지도사 사무실) 시범지역내 대표마을에 주재지도사 사무실을 둔다.

제10조 (개발사업비) 시범지역에 대하여는 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技術報國

군 읍면 리 부락

주재지도사

(제작시 유의사항)

- 규격은 가로 90cm, 세로 130cm, 기둥 높이 60cm로 한다
 - 재료는 철재를 사용한다.
 -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 고딕체로 한다.
 - 지구 모형의 진한 부분은 황토색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바다색으로 한다.
 - 손은 연분홍(살색)으로 한다.
- *설치시 지하는 50cm 이상 견고하게 묻어야 한다.

